<붙임 4>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

※ 법 제418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시 작성한다.

1)대주주 변동 현황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주구분[1]	국적[2]	변동사유[3] 및 변경일자	소유주식수 변동내역(지분율)[4]			
					변동 전	증가	감소	변동 후
김영재	******-*******	주요주주	한국	법 제418조 제5호에 해당 (2018.4.30)	231,349주 (7.81%[5])	3.439주 (0.12%)	0주 (%)	234,788주 (7.93%[5])

주 1)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인 주주, 주요주주 여부 등을 기재

2)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국가

3) 변동사유는 법 제418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 여부로 기재
(예: 제418조제4호, 2009. 2. 4.)

4)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주의 소유주식수 및 비율(당해 주주의 의결권 있는 소유주식수/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을 기재

5) 당사는 주주 중에 금융위원회에 대주주변경승인을 득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하여 의결권이 금지된 주식이 있습니다. 기재한 지분율은 의결권이 금지된 주식을 모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비율입니다. 의결권이 금지된 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지분율이(김영재-4.75%,증가-0.07%)입니다.